

1. 개정이유

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으나,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를 교육부령에서 제한하고, 상설연구학교가 되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종류도 제한하는 등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연구학교 지정 대상 확대(안 제2조)

현행 연구학교 지정은 초·중등교육법 상 학교 중 일부로 제한되어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그 종류를 확대하였고,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음에도 지정 대상은 교육부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전체 학교로 확대함.

나. 상설연구학교 지정 대상 확대(안 제4조 제5항)

국립대학부설학교는 교육감의 지정과 관계없이 상설연구학교가 되고, 운영비 지원 및 교원의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이 가능한데, 현행 상설연구학교는 국립대학부설학교에 유·초·중·고등학교로 한정되어 개교 예정('24.9.)인 부설 특수학교는 제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

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”를 “학교”로 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는”을 “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의 국립학교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부설하는 학교 및 유치원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를 대상으로 한다. 1. (생 략)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<u>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 학교·특수학교</u> 및 같은 법 <u>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</u>	제2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 <u>학교</u>
제4조(지정 등) ① 삭제 ② ~ ④ (생 략) ⑤ <u>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·초 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</u> 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. ⑥ (생 략)	제4조(지정 등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「 <u>고등교육법</u> 」 제3조의 국 립학교가 같은 법 제45조에 따 라 부설하는 학교 및 유치원은 -----. ⑥ (현행과 같음)